

이천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

소관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
제정 2016· 4· 29 훈령 제257호
일부개정 2019· 1· 1 훈령 제274호
(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천시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,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협업”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또는 부서 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시설·인력·정보 등 행정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.
2. “협업포인트”는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를 말한다.
3. “협업시스템”은 협업포인트를 주고받으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를 하는 ‘온-나라 이음’을 말한다.
4. “특별협업포인트”는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시 직원 중 협업에 기여하였거나 성과를 낸 직원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협업포인트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시 및 시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,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온-나라 이음 아이디어를 부여받은 직원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협업포인트 운영자) ① 시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. <개정 2019· 1· 1>

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·관리하고 특별 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.

③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시스템을 운영하며, 인사, 평가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,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기본 협업포인트 배정)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월 1일에 제3조에서 정한 직원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본 협업포인트 200포인트를 배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 협업포인트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는 매월 말일이 경과하면 소멸한다.

제6조(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) ① 제5조에 따라 기본 협업포인트를 배정받은 직원은 상대방 1명에 대하여 1회 10포인트씩 나누어 줄 수 있다.

② 협업포인트는 시 직원 뿐 아니라, 다른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. 다만, 동일 부서(과) 소속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고 동일인에 대해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.

제7조(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)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협업포인트 관리)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받은 협업포인트를 제5조에 따른 기본 협업포인트와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 현황과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을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부서 협업포인트 현황은 각 부서의 현원(제3조에서 정한 직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받은 포인트의 합으로 매일 집계하여 확정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전보·과견·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어도 제2항에 의하여 매일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.

④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·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이관하고, 다음 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.

제9조(특별협업포인트) ① 특별협업포인트는 협업포인트 운영자가 시 협업행정에 특별히 기여하여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부서를 선정하여, 그 개인 또는 해당 부서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특별협업포인트는 연간 총 1,000포인트로 하고, 1명에게 1회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는 50포인트 범위에서 운영자가 정한다.

② 특별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공무원 개인 간 주고받는 협업포인트 실적

과 별도로 관리한다.

제10조(협업포인트 메시지 공개 원칙) ① 협업포인트를 보낼 때에는 상대방에게 협업을 통해 받은 도움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함께 보낸다.

② 제1항에 따른 메시지는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한다. 다만,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.

제11조(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)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가 우수한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12조(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) ①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인사혁신처 ‘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, 부서별 자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근무성적평적 중 가점평가,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1·1 훈령 제274호,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내지 ⑪ 생략

⑫ 「이천시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」 제4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⑬ 내지 ⑰ 생략